##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은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87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8.

발 의 자:최은석・이성권・송언석

김소희 • 박준태 • 김성원

박충권 · 주진우 · 이상휘

신성범 • 고동진 • 권성동

정연욱 · 최보윤 · 정동만

의원(15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 액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·납부하기 위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소요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·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(신고서 작성비용 및 주식평가 수수료)의 경우 이를 공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음. 그러나, 양도소 득세의 경우,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'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작성비용'을 양도가액에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.

이에,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·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신고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1항제3호

신설 및 제55조제1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세의 신고대행 수수료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감정평가 수수료"를 "감정평가 및 신고 대행 수수료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에 관한 적용례)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5조(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	제25조(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		
세최저한) ① 상속세의 과세표	세최저한) ①		
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			
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			
을 뺀 금액으로 한다.		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세		
	의 신고대행 수수료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제55조(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	제55조(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		
세최저한) ① 증여세의 과세표	세최저한) ①		
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		
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			
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<u>감</u>	<u>감정</u>		
<u>정평가 수수료</u> 를 뺀 금액으로	평가 및 신고대행 수수료		
한다.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